#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5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달희

이헌승 · 김종양 · 이인선

고동진 • 한지아 • 박충권

임이자 · 김도읍 의원

(11인)

###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 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 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 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 억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마리나정거장"이란 마리나선박의 계류·보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2의2. "마리나정거장 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마리나선박의 계류·보관및 해양레저를 위하여 개발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마리나정거장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곽시설을 갖춘 항만, 항포구 등을 마리나정거장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마리나정거장을 지정하려는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된 마리나정거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 중 "마리나항만시설을"을 "마리나항만시설(마리나정거장시설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7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 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장의2에 제28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13(영업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 가 악화된 경우
  -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 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39조까지"를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마리나정거장"이란 마리		
	<u>나선박의 계류·보관에 필요</u>		
	한 최소한의 마리나정거장 시		
	설을 갖춘 곳으로서 제10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u>말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마리나정거장 시설"이란		
	<u>「어촌・어항법」, 「체육시</u>		
	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률」, 「항만법」, 「항만 재		
	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		
	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마리나선박의 계류・보관 및		
	해양레저를 위하여 개발된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 것을 말한다.</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 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 정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삭 제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4. -------법률」에 따른 <u>공공기관 중</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u> 관
- 5. ~ 7. (생략)
- ② ~ ④ (생 략)
- <신 설>

<u>.</u>
1.・2. (현행과 같음)

- 4. ----- 공공기관
- 5. ~ 7.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마리나정거장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곽 시설을 갖춘 항만, 항포구 등을 마리나정거장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마리나정거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정된 마리나정거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관리규정) ① <u>마리나항만</u> 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 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 (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해양수산부장</u>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u>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4조(관리규정) ① <u>마리나항만</u>
시설(마리나정거장 시설을 포
<u> 함한다)을</u>
②
<u>시 · 도지사</u> -
③ <u>시·도지사는</u>
<b>.</b>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② (생략)<신설>

	•	

- 1. ~ 9. (현행과 같음)
- 10.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 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 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의13(영업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
  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
  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 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저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u>는 경우</u>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
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
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
 여야 한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
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
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
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마리
나선박을 운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